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6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최기상의원안) ...	3

I. 개요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7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11.
- (3) 회 부 일 : 2025. 4.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처목) ○ 비과세 요건: - 자기소비 목적으로 구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 판매 금지 ○ <u>비과세 한도:</u>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u> ※ 시행령 : Max(시가의 20%, 240만원) ☐ 근로소득의 범위(제20조) ○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이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은 경우 해당 할인금액 ※ 시행령 : 시가=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 물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규정 및 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u>비과세 한도:</u> - <u>Max(시가의 30%, 360만원)</u>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최기상의원안 2025. 4. 11. 발의 (의안번호 9767)

☐ 개정안은 사업자나 법인(계열사 포함)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하거나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종업원이 얻는 이익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과거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 지원방식이 구매지원금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던 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¹⁾,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복리후생적 성격을 고려하여 자기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음.

□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령상으로 위임되어 있는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

1) 다만,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비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의료기관 할인서비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으로²⁾,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³⁾.

현행법은 비과세 기준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와 재판매 금지 기간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할 경우 비과세 할인한도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종업원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규정됨에 따라 발생하던 세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종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종업원 할인금액이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그런데 2024년 세법 개정논의 당시, 종업원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전체 세수 중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경우 종전 근로

2)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2006.4.27 2004 헌가 19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자들이 부담하지 않던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업원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대상 금액을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더 큰 값”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⁴⁾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20%를 정상적인 할인금액으로 인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취지로, 식사대, 출산·양육수당 등 다른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수준⁵⁾을 고려하여 24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해외 주요국의 직원할인 관련 소득세제 현황(2022년 기준)]

국가	주요내용
미국	제품: 할인액이 정상판매 매출총이익률 ⁶⁾ 초과시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서비스: 할인액이 정가가격의 20% 초과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일본	할인액이 시가의 30% 초과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영국	할인판매가격이 중고가치 미만 → 미달분 근로소득 과세
독일	할인액*이 연간 1,080 유로 초과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 할인액 = (시가 × 96%) - 할인판매가격
싱가폴	할인판매가격이 \$500 초과 → 할인액 전체 근로소득 과세

4) 2018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음.
(건설) 13.39 (전자) 16.47 (화학) 21.99 (제약) 38.99 (자동차) 11.43

5) 사내급식 등 식사대, 출산·보육 관련 급여, 공무원 상급·부상 등의 비과세한도는 연 240만원임.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경우 통상적인 금전 형태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 간 과세형평성 저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또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의 확대는 세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을 통해 혜택이 확대되는 비과세 규모는 할인금액 기준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이나, 해당 비과세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은 실질적 담세력이 높은 자로서, 비과세 할인 한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춘 자가 보다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적용요건과 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종업원 비과세 규정이 202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비과세 한도 등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6) 매출총이익률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문 의 처

02)6788-5149
